

# 안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00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9. 9. 7.  
발 의 자 : 문인수의원 외 5인

##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.

##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(안 제1조, 제2조).

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관계법령별첨

- 지방자치법

# **안산시의회에 출석 ·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**

**안산시의회에 출석 ·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하고 “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안산시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
4.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

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①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</u>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①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42조- ----- <u>안산시의회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범위) <u>안산시의회</u>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	3.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
4.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	4.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